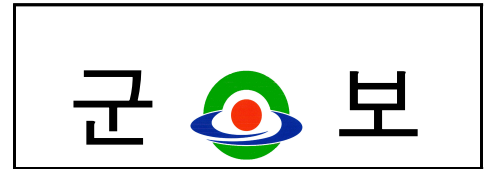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33호 2020. 5. 14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「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0-724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「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5월 11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 이유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6658호, '19.11.26. 공포) 및 「공무원 행동강령」(대통령령 제30607호, '20.4.7. 공포)이 일부 개정·시행('20.5.27.)됨에 따라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체계 변경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체계 변경(안 제15조제2항)

- 현행 : 사전신고
- 개정 :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

나. 제2항 사후신고 사항 반영에 따른 중복 조항 삭제(안 제15조제3항)

3. 개정규칙안

- 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기획감사실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, 반 여부 및 그 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 사항 등

다.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
- 전화 : 054-650-6046 팩스 054-650-6059
- 전자우편 : addadd@korea.kr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건	비 고

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본문 중 “공무원은”을 “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”으로, “미리”를 “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외부강의등을”을 “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“대가를”을 “사례금을”로, “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”를 “군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5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생 략)		제15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<u>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	② <u>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</u> ----- ----- ----- <u>그 외부강의등을 마</u> <u>친 날부터 10일 이내에</u> ----- -----. -----.		
③ <u>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한다. 다만,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,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 2016.4.11, 개정 2017.2.16., 개정 2018.9.20.></u>		<삭 제>		
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		④ -----		

현행	개정안
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<u>외부강의</u> 등을 제한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 <u>공무원의</u> <u>외부강의</u> 등을 ----.
⑤ ~ ⑧ (생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<u>대가를</u>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<u>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</u>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	⑨ ----- ----- <u>사례금을</u> ---- ----- --- <u>군수</u>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.

관 계 법 령

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】 [약칭 : 청탁금지법]

[시행 2020. 5. 27.] [법률 제16658호, 2019. 11. 26., 일부개정]

- 제10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**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“외부강의등”이라 한다)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. 11. 26.>
- ③ 삭제 <2019. 11. 26.>
-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1. 26.>
-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,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【공무원행동강령】

[시행 2020. 5. 27.] [대통령령 제30607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- 제15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**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“외부강의등”이라 한다)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4. 7.>
- ③ 삭제 <2020. 4. 7.>
-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4. 7.>
-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,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-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-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.
-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